

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
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0. 7. 2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46호로 2020년 7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
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
반영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수습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여
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 신설
(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, 제4항)
- 나.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- 다.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의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 신설(안 제4조의3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0. 6. 11. ~ 7. 1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건은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수습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4조에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고
- 안 제4조의2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
- 안 제4조의3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의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음.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 의거 특별재난 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. 따라서 치료비 등 지원항목 추가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,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 신설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회재난 수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(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제39조제1항(제46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자연재난

2.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·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사망자·실종자·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

2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
 3.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 4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의 자금 융자, 농업·임업·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
 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
 6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 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
 7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產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 8.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
 9.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-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·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